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제정 : 2019. 01. 22.
개정 : 2019. 08. 26.
개정 : 2020. 01. 21.
개정 : 2021. 08. 30.
개정 : 2024. 01. 23.
개정 : 2025. 07. 30.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이하 '대한협회'라 한다)의 심판 선발과 자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엄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심판원, 시험위원, 선발 관련 업무종사자 등 심판원 및 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 2 장 업무구분

제3조(선발·시험관리) 대한협회는 심판원 선발 및 시험업무 전반을 관리한다.

1. 시험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출제기준의 작성 및 검정·변경에 관한 사항
3. 시험위원의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 사항
5. 합격자 관리 및 심판증 발급에 관한 사항
6. 심판원 자격관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검정수수료 수납 및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심판원 선발시험 업무 및 자격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4조(시험관리 위원 위촉) ① 심판원 선발시험을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험위원을 구성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한다.

1. 책임관리위원 1명
2. 출제·감수위원 2명
3. 시험검정위원 4명

② 시험관리위원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이 위촉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매년 다르게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책임관리위원은 심판원 선발시험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한다.

② 출제·감수위원은 경기규칙 및 심판 실시 요령 등을 바탕으로 필기 및 실기·구술 시험 문제를 출제·감수한다.

③ 시험검정위원은 시험응시자를 대상으로 필기 및 실기·구술 시험을 실시하고 감독·평가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제 3 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6조(자격의 취득)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협회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종목) 자격의 종목은 1개 종목으로 하며 종목명은 그라운드골프 심판원이다.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한다.

제8조(자격소지자의 직무내용) ① 동 자격증은 그라운드골프에 대한 지식 및 활용 능력으로 각종 그라운드골프 경기에서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그라운드골프	1급	• 대한협회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협회의 승인을 득한 국제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심판원	2급	• 대한협회에서 승인 또는 위임한 시·도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 대한협회 또는 시·도 협회가 승인 또는 위임한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 시·도협회가 주최·주관하는 도 단위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3급	• 시·군·구 협회가 주최하는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 동호회가 주최하는 공식 및 친선 경기의 심판 역할을 수행한다.

③ 상급 심판원은 하급 심판원의 직무내용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그라운드골프심판원	1급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그라운드골프 경기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며, 심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최고급 수준
	2급	준전문가 수준의 그라운드골프 경기규칙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며, 심판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을 갖춘 고급 수준
	3급	그라운드골프 경기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그라운드골프 경기에서 심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 할 기본 능력을 갖춘 수준

제10조(검정의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으로 시행하며, 응시자는 필기시험과 실기 및 구술시험 2가지 모두를 응시하여야 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형태는 4지선다 객관식 및 단답식, 주관식 혼용으로 한다.
2. 시험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라운드골프 경기 규칙
   - 심판원의 임무와 자세

- 타수기록카드 작성법
- 그라운드골프 심판매뉴얼

③ 실기 및 구술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그라운드골프 심판매뉴얼에 기초하여 경기 현장에서의 실무능력을 측정한다.
   - 타수기록카드 작성법
   - 그라운드골프 심판매뉴얼
   - 그라운드골프 경기 규칙
2. 평가방법은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다.

제11조(응시자격) ①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1급	2급 심판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고, 제30조(심판원의 품위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2급	3급 심판원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하고, 제30조(심판원의 품위와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3급	시력, 청력 등 신체 건강하고 심판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로서 시험일 현재 아래의 자격증 보유자 1. 그라운드골프 3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 보유자 2.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부여한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보유자

제12조(합격결정 기준) 대한협회에서 실시하는 심판원 선발시험 문제의 구성과 합격점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험문제 구성 : 필기 40점, 실기 및 구술 40점, 타수기록카드 작성 20점
   (단, 1급은 그라운드골프협회의 경영)
2. 합격 기준 점수 : 총점 70점 이상(100점 만점)

제 4 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①대한협회는 검정의 종목, 수험자격,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검정일시, 검정장소 및 수험자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검정안내서를 작성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수험 원서접수)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응시자격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험원서는 시·군·구협회와 광역시·도 협회를 경유하여 대한협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② 광역시·도협회는 수험원서의 흠결을 사전 검토 후 수험원서 하단의 추천란에 추천 가·부를 표기하여 대한협회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원서는 방문·이메일·우편·팩스로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한다.

④ 수험표는 각 시·도 협회를 통하여 교부한다.

제15조(응시 수수료) ① 심판원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 선발시험 응시 수수료는 이사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④ 응시수수료의 환불은 선발시험 1일 전까지는 전액 환불하고, 그 외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 5 장　검정시행

제16조(검정시행 총괄) 시험장 책임관리위원은 시험 시행 전에 시험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본부를 운영하고,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위원을 지휘, 감독하며 시험위원회의, 평가회의 주관 등 시험집행 및 시험관리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위원 기술회의) 책임관리위원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회의를 개최하여 필기시험에 있어서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상 유의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8조(수험자 교육) ①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시험진행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및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수험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지정한 필기구, 시설.장비 또는 지급된 재료(공구)이외의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

제19조(수험자 확인) 감독위원은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시험시간마다, 실기시험에 있어서는 수시로 원서부본과 주민등록증 또는 회원증과 수험표를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5분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하고,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회수 확인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제21조(부정행위자 처리)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가 확정된 이후 3년 동안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22조(답안지) 필기시험 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현황을 기재하고,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입, 날인 또는 서명한 다음 본부위원의 확인을 받은 후 수험자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봉인하여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문제지 회수) 본부위원은 필기시험 종료 즉시 감독위원으로부터 문제지와 답안지 및 사무용품 등을 확인.회수하여야 한다.

제 6 장 심판원 등록 및 자격관리

제24조(심판원 등록 신청) ① 심판원 시험에 합격하거나 승급 심의를 통과하여 심판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급 심판원 : 50,000원
2. 2급 심판원 : 30,000원
3. 3급 심판원 : 20,000원

② 등록 신청은 합격 공고일 후 2개월 이내에 광역시·도 협회를 경유하여 [별표2]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심판원 등록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원으로 등록 할 수 없다.

1. 대한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
4. 대한협회 정관 제26조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②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한다.

제26조(심판원증 교부) ① 심판원 등록자에게 협회는 심판원증을 교부한다.
② 심판원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이 있을 때는 재교부 받을 수 있다.
③ 재교부를 신청하려면 [별표3] 양식에 따라 재교부신청서를 작성하고 재교부 수수료 10,000원을 첨부하여 대한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등록의 취소 및 자격 말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대한협회는 해당 심판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말소한다.
① 제30조가 정하는 바 심판원의 의무를 3년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회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단, 회원자격을 재취득하면 심판원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사망한 때

④ 등록 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제28조(심판원의 징계) 다음의 경우에 대한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심판원을 징계하여야 한다.
① 심판원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② 특별한 사유없이 심판원의 의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③ 경기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④ 기타 심판원으로서 품위와 권위를 실추시킨 행위가 있는 등 신뢰할 수 없는 심판원으로 인정되었을 때

제29조(심판원의 역할과 권리) ① 심판원은 급수에 따라 대한협회 또는 시·도 및 시·군·구가 주최·주관하는 대회의 심판을 담당한다.
② 심판원은 경기 심판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제30조(심판원의 품위와 의무) ① 심판원은 대한협회가 지정한 심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심판원이 심판업무를 수행 시에는 심판원증을 패용하거나 휴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심판원은 승급 심의기간 동안 대한협회 또는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심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⑤ 교육에 필요한 재정확보를 위하여 교육 참석자에게 일정 금액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각 시·도 및 시·군·구 협회는 승인 또는 위임하거나 지정된 공식대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 대회 심판원 명단과 개인별 특이사항을 대한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자격취득 및 승급절차) ① 심판원의 승급은 승급시험으로 적용한다.
1. “삭제”
2. 승급 시험 대상자는 심판원 자격 취득 후 2년 경과자 중에 제30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으로 대한협회장 및 시·도협회장의 추천을 받은자로 한다.
② 승급 시험을 통과한 심판원은 등록절차를 이행함으로써 당해 심판원이 된다.

③ 심판위원회는 필요 시 연 1회 이상 심판원 시험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2조(심판원 자격관리) ① 심판원은 기회의 불균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협회 및 시·도협회에 급수에 상응하는 심판원 기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요청을 받은 대한협회 및 시·도협회는 서류를 심사 후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차기 경기 시 우선하여 심판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각 시·도 및 시·군·구 협회는 매 대회 종료 시마다 해당 대회 심판원 명단을 본 협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심판원 등록 및 활동상황) ① 심판원 등록 신청서는 [별표2]와 같다.
② 심판원 활동 실적 발급은 심판위원회 규정 제15조 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대장의 부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 7 장 심판원 복장

제34조(심판원 복장) ① 심판원 복장은 선수들과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하되 대한협회가 따로 정한다.
② 상의에는 개인명찰, 심판 표식 등을 패용한다.
③ 모자에는 협회 로고를 부착하고, 신발은 스포츠 캐쥬얼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제35조(계절별 복장) 심판원 복장은 계절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① 3계절용 복장(봄, 가을, 겨울)
1. 대한협회가 정한 복장으로 상·하의, 모자를 착용한다.
2. 연한 하늘색 긴팔 또는 반팔 티셔츠에 그라운드골프 로고가 새겨진 루프타이를 착용한다.

② 하절기 복장(5~9월)
1. 지정된 정장을 탈의하고 연한 하늘색 하절기용 와이셔츠와 지정된 루프타이를 착용한다.

2. 하의는 3계절용 색상과 동일한 춘추용 얇은 바지(곤색)를 착용한다.
3. 심판 모자 또는 그라운드골프 로고가 부착된 흰색 창모자를 착용한다.

부 칙(2019.1.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심판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시행 초기 심판원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예외 규정을 둔다.
①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을 2년 이상 보유한 현직 대한협회의 임원 및 사무처장, 스포츠공정위원, 시설위원, 심판위원, 시·도 협회장과 사무국장에게는 3급 심판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부 칙(2019. 8. 26.)

제1조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외규정) 심판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시행 초기 심판원 확보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급 이상 지도자 자격증을 2년 이상 보유한 현직 대한협회의 임원 및 사무처장, 스포츠공정위원, 시설위원, 심판위원, 시·도 협회장과 사무국장 중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3급 심판원 자격을 부여한다.

부 칙(2020. 1.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8.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 7.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25년 2급 심판원 심사까지는 개정 전 규정을 유예한다.

[별표 1]

( )급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선발시험 응시원서

응시번호		생년월일	(남, 여)	사 진 (가로 3.5㎝ × 세로 4.5㎝)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지도자자격	급	취득년도	년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이 원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자격 관리 운영 규정」 제11조에서 정한 응시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때에는 합격 또는 자격을 취소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귀하

(자르는 선)

( )급 그라운드골프 심판원 선발시험 응시표

응시번호		생년월일	(남, 여)	사 진 (가로 3.5㎝ × 세로 4.5㎝)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시험일시	년 월 일 시			
시험장소				

년 월 일

(사)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인]

[별표 2]

( )급 심판원 등록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사진
(3 × 4)
2매</td><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r>
<tr><td>지 역
(시,군,구)</td><td></td><td>지도자
급수</td><td></td></tr>
<tr><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 관리 관련</td></tr>
<tr><td>수집 항목</td><td colspan="4">사진, 성명(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td></tr>
<tr><td>보유 및
이용기간</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으로 활동하는 기간</td></tr>
<tr><td>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 등록과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판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td></tr>
</table>

상기 본인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 등록을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개인정보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_____(서명 또는 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귀하

등록년월일	등록번호

시도협회	
시군구협회	

[별표 3]

( )급 심판원증 재발급 신청서

<table>
<tr><td rowspan="4">사진
(3 × 4)
2매</td><td>성 명</td><td></td><td>성 별</td><td></td></tr>
<tr><td>지 역
(시,군,구)</td><td></td><td>등록
번호</td><td></td></tr>
<tr><td rowspan="2">생년월일</td><td rowspan="2"></td><td colspan="2">연락처(☎)</td></tr>
<tr><td colspan="2"></td></tr>
<tr><td>주 소</td><td colspan="4"></td></tr>
<tr><td>재발급 사유</td><td colspan="4">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전입, 개명 등) · 기타( )</td></tr>
<tr><td>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 관리 관련</td></tr>
<tr><td>수집 항목</td><td colspan="4">사진, 성명(한글, 한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재발급 사유</td></tr>
<tr><td>보유 및
이용기간</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으로 활동하는 기간</td></tr>
<tr><td>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권리</td><td colspan="4">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증 재발급과 관련하여 상기 기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심판원증 재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td></tr>
</table>

상기 본인은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 심판원증을 재발급 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항」에 의거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동의인) _____(서명 또는 인)

대한그라운드골프협회장 귀하

시도협회	
시군구협회	